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속자 등에 대한 서류 송달 특례 신설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36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구속자 등에 대한 서류 송달 특례 신설	3
2.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	6
3. 후발적 경정청구 표현 명확화	9
4.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요소 추가	13
5.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 정비	19
6. 이의신청 대리인 관련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상향	23
7.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27
8. 지방세 운영 관련 포상금 근거 신설	3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안연월일 : 2024. 11. 7.
3. 회부연월일 : 2024.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구속자 등에 대한 서류 송달 특례 신설

개정안은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생략) ¹⁾ <u><신설></u>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현행법상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서류의 수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교정시설²⁾ 또는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자의 경우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³⁾에 따라 우선 그 주소지로 서류를 송달한 후 이를 대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 교정시설 등으로 송달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자의 경우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하려는 것임.

불필요하게 송달을 중복 실시함에 따른 행정비용 가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민사소송법」⁴⁾은 이미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② 「국세기본법」도 2018년 12월 31일 개정(2019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장 지방세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

법30-4[수감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와 서류를 대신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에 서류를 송달한다.

4)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국세기본법」과의 조문 비교]

「국세기본법」	개 정 안
제8조(서류의 송달)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28조(서류의 송달)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2.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

개정안은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금지 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 ④ (생략) ⁶⁾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 ⁵⁾ 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금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⁷⁾으로 규정하면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시효를 중단⁸⁾시키고 있음.

다만, 「지방세징수법」은 압류를 금지(같은 법 제40조)하거나 압류를 즉시해제(같은 법 제63조제1항 등)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압류한 경우에는 해당 압류가 무효가 되어 시효가 중단되지

-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채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채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채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7)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8)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서,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유지된 채 정지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잔여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시효정지와 구분됨.

않음에도 그 사실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① 국민의 법률 이해를 쉽게 하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② 「국세기본법」도 2023년 12월 31일 개정(2024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국세기본법」과의 조문 비교

「국세기본법」	개 정 안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⁹⁾ 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국세기본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채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채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채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은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채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은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채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채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채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3. 후발적 경정청구 표현 명확화

개정안은 현행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¹⁰⁾ ① (생략)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 ----- ----- ----- ----- -----.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1. (현행과 같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u>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u>	3. ----- ----- <u>발생하였을 때</u>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50조제2항은 지방세가 최초 부과·징수 또는 신고·납부된 이후 특정한 사유(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후발적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후발적 경정사유를 같은 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과·징수 세목(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과 신고·납부 세목(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같은 항 제3호의 경정사유가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로 표현되어 있어 신고·납부 세목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개정안은 해당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임.

① 현행법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주체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신고·납부)”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부과·징수)”로 표현하여 부과·징수 세목도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고,

②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¹¹⁾에 따른 후발적 경정

1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사유들도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과·징수 세목이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자구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¹²⁾

다만,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실질적 효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표현을 정정하는 개정에는 적용례를 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안과 같은 적용례를 두는 것이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상 오해 (부과·징수 세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해석)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2) 참고로,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에도 현행법과 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개정안은 제안되지 않은 상황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요소 추가

개정안은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 요소에 “미납·과소납 세액의 0.66%”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illegible]

현행	개정안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11. (생략)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 다. (생략)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u>납부 지연가산세</u>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 사. (생략) ②·③ (생략)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납부 지연가산세</u>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마. ~ 사.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1.·2. (생략) 3.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②·③ (생략)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 ----- ----- -----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납부지연가산세란 납세자가 지방세를 미납부·과소납부·초과환급받은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으로서,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에 적용되는 ① 납부지연가산세와 특별징수의무자¹³⁾에 적용되는 ②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됨.

한편, 납부지연가산세는 2020년 12월 개정(2024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종전 「지방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증가산금이 통합된 것으로서, 다음 표와 같이 원칙적으로 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증가산금 산정기준 각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하나로 통합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의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舊가산금 항목(체납액 × 3%)만 개정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개정안은 이를 현행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요소 중 하나로 사후 반영(체납액 × 0.66%로 인하 반영)하려는 것임.

13) 지방세를 대신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경우 세무서장·세관장,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규정되어 있음

[2020년 12월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기본법」 舊납부 불성실 가산세	-	「기본법」 납부지연 가산세	-	「기본법」 舊납부 불성실 가산세	과소세액 × 3%	「기본법」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세액 × 3%
	과소세액 × 지연일수 × 이자율		과소세액 × 지연일수 × 이자율		과소세액 × 지연일수 × 이자율		과소세액 × 지연일수 × 이자율
「징수법」 舊가산금	채납액 × 3%		채납액 × 3%	「징수법」 舊가산금	채납액 × 3%		-
「징수법」 舊증가산 금	(납기 1월 경과시) 채납액 × 채납월수 × 이자율		(납기 1월 경과시) 채납액 × 채납월수 × 이자율	「징수법」 舊증가산 금	(납기 1월 경과시) 채납액 × 채납월수 × 이자율		(납기 1월 경과시) 채납액 × 채납월수 × 이자율

주) 지연일수: 신고·납부기한부터 납부 또는 지자체 (직권)부과·고지까지 지연된 일수

채납일수: 신고·납부기한 도과 후 지자체가 (직권)부과·고지한 납기로부터 납부까지 채납된 일수

① 이는 2020년 12월 개정 당시 누락된 사항을 사후 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 ②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舊가산금은 다음 표와 같이 신고·납부기간 도과 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부과·고지한 납기를 준수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부과하지 않으면 해당 납기를 준수하지 않을 유인¹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납세 절차별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부과목적 및 기준]

신고·납부기한 도과시	신고·납부기한 도과후 (직권)부과·고지에 따른 납기 도과시	(직권)부과·고지에 따른 납기 1개월 추가 도과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I (舊납부불성실가산세) -목적: 신고·납부기한 준수 -기준: 과소세액×3% + 과소 세액×지연일수×이자율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II (舊가산금) -목적: (직권)부과고지에 따른 납기 준수 -기준: 미부과중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III (舊증가산금) -목적: (직권)부과고지에 따른 납기 준수 추가 강제 -기준: 채납액×채납월수×이자율

14) 정확히는 舊증가산금이 부과되는 (직권)부과·고지 납기 후 1개월까지 준수하지 않을 유인

다만,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공포 후 시행 전 조항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을 대상으로 입안 되어 있는데,

법률안 입안시 공포 후 시행전 법률은 조·항·호·목 등 세부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¹⁵⁾ 현행법 제56조 중 공포 후 시행 전 조항은 같은 조 제3항일뿐 동 개정내용의 대상인 같은 조 제1항은 이미 시행 중인 조항이므로, 현행 조항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15)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p.157-159.

5.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 정비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 및 「지방세법」상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에 연동하여,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 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 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 세기간에 발생한 「지방세법」 제87 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 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 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개정안 생략: 목차 4.에서 검토) ② (현행과 같음)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국세)로서,

① 주식·채권·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20~25%의 세율로 포괄적으로 과세하되, ②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분류과세)하며, ③ 기본공제 및 손실을 상계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되 5년간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짐.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방법	• 분류과세(종합과세와 별도의 과세체계)
과세대상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포괄적 과세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액 - 기본공제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이월공제 5년 허용)
손익통산	• 금융투자소득으로부터의 손익 및 손실 간 상계 허용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5천만원 • (그 외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원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신고·납부	• 금융회사가 반기별 원천징수, 납세자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4.10., p.38.

당초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상황인데, 2024년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둔 현재 까지도 그 시행을 둘러싼 찬반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목적을 언급하며 ① 현행 조세체계는 금융상품의 유형 및 소득 실현방식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있어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손실 상계 및 이월을 통하여 실질적인 순수익만 과세하는 것이 응능과세원칙¹⁶⁾상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¹⁷⁾

반면 정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2020년 추정치 기준으로 과세대상자가 15만명까지 확대(세부담 +1.5조원 증가)되고 그 밖에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해외시장 등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¹⁸⁾

이에 개정안은 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찬반입장을 고려하고, ② 기획재정위원회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결과 및 우리 위원회의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16)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세원칙

1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4.10., pp.42-43.

18) 기획재정부(세제실), 「2024년 소득세법 개정요강」, 2024.8.

[제22대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률안 현황]

구분	의안번호	제안자	주요내용	소관상임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89	박대출의원 등 108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재위
	2203518	정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85	박대출의원 등 14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행안위
	2205362	정부		

6. 이의신청 대리인 관련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상향 등

개정안은 이의신청 대리인을 전문자격사가 아닌 친족 등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¹⁹⁾ ① (생략)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u>1천만원</u>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 <u>2천만원</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9)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현행 조세관계법들은 국세·지방세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상 불복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청구가 있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심사청구만 제외한 나머지 제도가 「지방세기본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국세·지방세 행정상 불복제도]

구분		국세 (신청/청구대상)	지방세 (신청/청구대상)
사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지자체장)
사후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제66조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자체장)
	심사청구	「국세기본법」 제7장제2절 (국세청장)	※ 2020.1.1. 폐지
	(조세)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 (조세심판원장)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조세심판원장)

주) 사법적 불복제도인 행정소송은 제외

한편, 「국세기본법」²⁰⁾ 및 「지방세기본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

20)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청구의 전문성·난이도를 고려하여 신청인·청구인을 대리해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 제도를 두면서 그 자격을 변호사·세무사 및 일부 공인회계사로 제한하되,

신청인·청구인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신청·청구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사건”은 상기 자격사 외에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중 이의신청의 “소액사건” 기준금액을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²¹⁾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첫째, 현행법이 소액사건에서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은 영세한 신청인·청구인이 비용문제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여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참고로, 같은 이유에서 다음 표와 같이 행정심판은 모든 사건에 대해 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민사소송도 1억원 이하 일부 단독사건²²⁾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21)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소액사건 기준 금액을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임.(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7.27.)

22)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에서 상향하려는 금액 기준(2,000만원)이 과다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행정심판·민사소송의 친족관계 대리인 선임 가능 범위]

구분	법령상 근거	친족관계 대리인 선임 가능 범위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18조	모든 사건
민사소송	「민사소송규칙」 제15조	1억원 이하 일부 단독사건 (법원 허가 필요)

둘째, 동일한 지방세에 대한 행정상 불복제도 중 (조세)심판청구의 소액사건 기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국세·지방세 모두를 일괄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 2월 29일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심판청구의 소액사건 기준이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²³⁾

이의신청의 소액사건 기준금액도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제도간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행정상 조세불복 제도의 친족관계 대리인 선임 가능 범위]

구분		법령상 근거	친족관계 대리인 선임 가능 범위
국세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5,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심사청구		
	심판청구		
지방세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3조	1,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23) 참고로,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소액사건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의안번호 212518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도 2023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23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한바 있음.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 기관이 해당 개정내용에 반대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개정안 전체의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한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해당 개정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안이 의결되었음.

7.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개정안은 현행 영세한 개인뿐 아니라 영세한 법인의 경우에도 지방세 불복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 ----- ----- ----- ----- ----- ----- ----- -----.
1. <u>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²⁴⁾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u>	1. <u>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u>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 ²⁵⁾ 을 말하며, 제153조 ²⁶⁾ 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²⁷⁾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²⁸⁾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 <u>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u> 3. ~ 5. (생략) ② ~ ④ (생략)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일 것</u> <u><삭 제></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5)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6) 「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7)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국세기본법」상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지방세 불복절차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일정 소득·재산 이하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료로 변호사·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기준이 국선대리인에 비해 협소하다는 인식 하에 신청자격(개인 → 개인·법인)과 대상금액(1,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을 다음 표와 같이 확대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이 중 법률 개정사항인 신청자격에 현행 개인뿐 아니라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기준 개편 방향]

구분	국선대리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비고
		현행	개편방향	
신청자격	개인·법인	개인	개인· 법인	법률 개정
수입·자산 기준	- 개인 : 종합소득 5,000만원 / 특정재산 5억원 이하 - 법인 : 수입 3억원 / 자산 5억원 이하 ※ 2024년 1월 법인 추가	- 개인 : 국선대리인과 동일	- 개인 : 국선대리인과 동일 - 법인 : 국선대리인과 동일	시행령 개정
대상금액	5,000만원 이하 ※ 2023년 2월 3,000만원 → 5,000만원 인상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시행령 개정

이는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이며 특히, 신청자격은 「국세기본법」상 국선대리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선대리인과의 조문 비교]

국선대리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개정안)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

국선대리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개정안)
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u>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u> 2. 삭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②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	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u>「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u> 2. 삭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

국선대리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개정안)
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마.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u>5천만원</u>을 말한다.	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u>2천만원</u>을 말한다.

8. 지방세 운영 관련 포상 근거 신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내에 있는 시·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u><신설></u>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에게 포상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공적 창출이 촉진된다면 이는 소액의 예산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으로서 효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미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²⁹⁾을 근거로 개정안에 따른 포상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① 포상의 유형 중 포상금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포상 근거가 명시될 경우 관련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②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³⁰⁾에 따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포상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29)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8(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의 방법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징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국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안번호 22047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그 심사 경과 또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33